

선	기관의 장
람	



제 565 호

2004년 3월 19일 금요일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04-12호(인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결정(변경) 및지형도면고시) 3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제2004-13호(인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공공청사, 학교)] 결정및지형도면고시) 4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177호(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안)입법예고공고) . 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180호(가로기게양관리의위탁공고) 1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183호((긴급)공사입찰공고(전자입찰)<소래길장미거리조성공사>) 2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185호((긴급(물품구매입찰공고(전자입찰)<2004년도가로등설치 및보수공사관급자재구입(연간단가)>)) 2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188호(공사(견적)입찰공고(전자입찰)<남촌동중앙길외4개소 농로포장공사>) 2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189호(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190호(인천광역시남동구보안등설치및관리지침(안)입법예고공고) .. 3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191호(재결서정본공시송달공고(석정중학교신설사업)) 3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192호(입찰공고(전자입찰)<도로보수차구입>) 3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제2004-193(공시송달공고(2003년도분재산세고지서)) 40

회								
람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4-12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032-453-2684) 및 건설과(☎032-453-257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4. 3. 15.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결정취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도로, 학교)의 결정(변경)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도시계획시설(도로:중1-150호선)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50	20	국지 도로	820	간석동 394 (간석역 광장)	간석동 485 (대3-13호선)	일반 도로	인고제	일부구간 중복 (공원·철도104m)결정
변경	중로	1	150	20	국지 도로	811	간석동 394 (간석역 광장)	간석동 485-12 (대3-13호선)	일반 도로	98-37	

○ 도시계획시설(학교:중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 의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학 교	중 학 교	구월동 24번지	-	중)11,221	11,221		

3. 지형(결정)도면 : “별첨”(게재생략)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04-13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공공청사, 학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공공청사, 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을 제30조 및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를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계획과(☎032-453-268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4. 3. 20.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16	4	특수 도로	132	구월주공 아파트 2단지	대2-31	보행자 전용도로			

나. 공간시설

○ 녹지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녹지	경관녹지	구월동 20번지	-	1,446	1,446		

다. 공공시설

○ 공공청사, 학교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공공청사	동사무소	구월동 23번지	-	1,013	1,013		
신설		공공청사	파출소	구월동 24번지	-	375	375		
신설		학교	초등학교	구월동 24번지	-	11,440	11,440		

☐ 결정도면(지형도면) : “계제생략”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4-177호

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안)

2. 개정취지

현재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레식장운영관리조례에 의거 구민에게 2층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개방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예식이외에도 문화 예술 및 각종 행사의 대관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현 실태에 맞도록 폭 넓게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개정내용 : “별첨” 참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2004년 4월 6일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453-214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4년 월 일

제출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현재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레식장운영관리조례에 의거 구민에게 2층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개방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 예식이외에도 문화 예술 및 각종 행사의 대관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현 실태에 맞도록 폭 넓게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설물의 명칭 변경 (안 제2조)
 - 기본시설인 대회의실을 “대강당”으로 중회의실을 “소강당”으로 함
- 사용자의 자격 : 구에 주소를 둔 주민과 사업주로 함(안 제4조)
- 사용시간 및 사용료 (안 제6조 및 제7조)
 - 사용목적 및 용도에 따라 적용
- 다른(이전) 조례의 폐지 (부칙 제3항)
 -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레식장운영관리조례”폐지

☐ 본문 : “별첨참조”

☐ 참고사항

- 입법예고 : 20일이상
- 시설물 대관료 적용 타 자치구 사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의실의레식장운영관리조례
- 인천광역시남동구청회의실운영관리규정

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남동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강당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 또는 “강당”이라 함은 대강당 및 그 부속시설, 소강당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시설물의 사용”이라 함은 시설이용 신청 또는 허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의 설비”라 함은 기존 설비이외에 예식, 공연, 집회, 기타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3조(사용 범위) 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소강당
2. 부속설비 : 무대시설, 음향시설, 조명시설, 비디오프로젝트, 피아노, 기타 행사 및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

②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용시설 및 비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부대기실, 폐백실

2. 접수대
3. 드레스 및 폐백복
4. 축지, 성혼선언문, 혼인서약서, 방명록

제4조(사용자 등의 자격) ① 제3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에 주소를 둔 주민과 사업주에 한한다.

②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혼하는 신랑, 신부 또는 그 직계가족 중 1인이 접수일 현재 남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2. 구청 산하 전직원 및 직계가족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강당은 다음 각 호의 사용 목적에 따라 허가한다.

1. 예식(대강당에 한함)
2. 문화예술행사 등 공연 및 발표회
3. 교육 및 토론회, 설명회, 강연회
4. 각종 기념식 등 의식행사

③ 동조②항 1호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을, 그외 각 호의 경우는 별지2호 서식을 각각 사용하여 사용예정일 1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용신청에 의한 결정 및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정한다.

1. 구청에서 주관(최)하는 행사
2.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주관(최)하는 행사중 구청에서 후원하는 행사
3. 사용신청 접수 순서

⑤ 동조④항 1호의 경우에는 신청 및 허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시간) ①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② 단, 예식을 위한 대강당 사용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한하며, 1회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11:00부터 16:00까지로 한다.

제7조(사용료)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인천광역시남동구재무회계규칙 제35조의 납입고지서로 구금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를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3호 서식의 허가대장에 기재함과 동시에 별지4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1조 및 12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 취소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① 구청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동조례 제5조④항1호의 경우

2. 국가·공공기관에서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어야 할 행사

② 대강당을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대상과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수급자증명서)

2. 국가유공자 및 직계가족(보훈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3. 등록장애인(장애인증명서)

4. 저소득국민의 합동결혼식(추천서)

5. 구청 산하직원 및 현직 의원의 직계가족(재직확인)

제9조(사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강당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업적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 및 정당·정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강당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차질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5.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비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사용비품 이외에 필요한 것은 사용자가 구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각종행사, 공연, 발표회 등의 홍보물을 구청내에 부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행사 종료 후 각종 쓰레기 발생분에 대하여 분리수거하여 자체 처리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구청장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행사를 취소 정지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취소명령(별지6)하거나 사용제한 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동 조례 및 허가 조건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당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강당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사용일 15일전까지 취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원상복구 등) 구청장은 사용자가 건물과 기물을 훼손·멸실한 부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타법령과의 관계)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조례의 폐지)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동구청대회 의실의례식장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한다.
-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예식 사용 신청서

○ 접수번호 :

신 랑	성 명		혼주및혼주와의관계	의 ()남
	주 소	(가)		
신 부	성 명		혼주및혼주와의관계	의 ()여
	주 소	(가)		
예약일시	년 월 일 시			
비품사용 여 부	1. 드레스(본인준비, 구청제공) 2. 폐백복(본인준비, 구청제공) 3. 기 타()			
사용료	금	(₩)		

위와 같이 남동구청 대강당(예식)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주민등록확인필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강당(시설물)사용 신청서

사 용 자	주 소				
	단체명		전화번호	사무실	☎
	성 명 (대표자)			자 택	☎
		주민등록번호			
사용시설	☐ 대강당 ☐ 소강당				
사용목적 및 내용					
사용시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총 시간 분)			참석예정 인원수	
사용시설 및 설비	기본시설 부속설비	☐ 무대시설 ☐ 음향시설 ☐ 조명시설 ☐ 피아노 ☐ 비디오프로젝트 ☐ 기타 ()			
	사용자설비				
사 용 료	금 (₩)				
비 고	첨부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1부.				

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일일일

신청인 : 성명 (인)

※ 사용자와의 관계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강당(시설물) 사용 허가서

사 용 자	주 소			
	단체명	전화번호	사무실	☎
			자 택	☎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용목적 및 내용		☐ 예식 ☐ 문화예술행사(공연, 발표회) ☐ 교육 및 토론회, 설명회, 강연회 ☐ 기념식, 의식행사		
사용허가시간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총 시간 분)	참석예정 인원수	
사용허가시설 및 설비	기본시설	☐ 대강당 ☐ 소강당		
	부속설비	☐ 무대시설 ☐ 음향시설 ☐ 조명시설 ☐ 피아노 ☐ 비디오프로젝트 ☐ 예식시설 ☐ 기타 ()		
	사용자설비			
사 용 료	대관료	₩		
허가조건	1. 동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비품에 대하여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한다. 3. 동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 및 사용중지 명령시에 응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별지 제5호)

강당(시설물) 사용 허가의 취소				
신청자	주 소			
	단체명 (성명)		연 락 처	☎
취소사유 및 내역		취소사유		
		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사용시설	☐ 대강당(예식, 문화예술행사, 강연, 기념식) ☐ 소강당(발표회, 세미나, 설명회, 교육, 기념식)	
납부한 사용료		₩		
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 사용 허가에 대하여 취소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취소신청자 :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강당(시설물) 사용 허가 취소 명령				
신청자	주 소			
	단체명 (성명)		연 락 처	☎
사유 및 내역		취소사유	동조례 제11조 제1항 (1호, 2호, 3호, 4호, 5호)	
		사용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사용시설	☐ 대강당(예식, 문화예술행사, 강연, 기념식) ☐ 소강당(발표회, 세미나, 설명회, 교육, 기념식)	
인천광역시남동구강당운영관리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을 취소·사용중지 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별표1】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

시설구분	용도	사용시간	사용료	기 준	비 고
대강당	예식	1회 11:00~12:00 2회 13:00~14:00 3회 15:00~16:00	90,000	1회	※피로연 장소 별도계약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기념행사	09:00~21:00	80,000	1시간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간 별도 - 사용료의 50%
	강연회 설명회 토론회 교 육	09:00~18:00	50,000	1시간	▷18:00이후 사용시간 20%가산
소강당	기념행사 발표회 창작활동	09:00~21:00	40,000	1시간	▷18:00이후 사용시간 20%가산
	세미나 토론회	09:00~18:00	30,000	1시간	

※ 대관료에는 전기료 및 냉·난방비 포함

※ 기준시간외, 초과시간은 30분당 일할 계산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4-180호

가로기 게양 관리의 위탁 공고

가로기 게양 관리의 위탁업체 선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의민간위탁
촉진및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가로기 게양관리 위탁계획

- 게양시기 : 연간 18회(국경일, 기념일, 민방위의 날 등)
- 가로기 종류 : 4종(태극기, 구기, 시기, 민방위기)
- 게양구간 : 남동구 관내 주요간선도로 6개노선, 1,760개소(×2), 88km
- 위탁예정액 : 28,854천원

2.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간

3. 위탁업체 협약방법 : 수의계약

4.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일시 : 공고일로부터 2004. 3. 22 16:00까지

5. 등록 및 견적서 제출장소 : 남동구청(총무과)

6. 참가업체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 또는 사용인감, 사업계획서

7. 위탁협약자 선정방법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선정

8. 참가업체 자격조건

-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갖춘 단체 및 사업자
- 인력 및 시설 장비의 보유
 - 차량(1톤 화물) 3대이상, 인력 6명이상, 가로기 보관장소, 기타 가로기 게양에
필요한 장비

9. 기 타

- 견적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전 「가로기게양위탁관리운영계획」 및 「계약서(안)」 참고

2004년 3월 16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04 - 183호

(긴급) 공 사 입 찰 공 고(전자입찰)**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소래길 장미거리 조성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 일

○ 설계금액 : 148,544,000원

○ 사업개요

- 식재공사

· 덩굴장미 8,253주 · 장미 2,552주 · 담쟁이 6,420주

· 영산홍 2,000주 · 백철쭉 1,107주

○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 2004년 3월16일(화) 09:00 ~ 2004년 3월22일(월) 10: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4년3월22일(월)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수 있습니다.

○ 설계도서 열람일시 및 장소 : 2004년3월16일(화)~2004년3월22일(월) [도시정비과]

○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까지 계속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업소

(영업소)를 갖춘자로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업체로서,

○ 건설기술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조경식재공사업면허소지업체

3.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적격심사 실시)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제한적)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 후 낙찰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서류를 7일 이내 제출
- 적격심사 서류제출
 -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예규제136호,2004.2.6)에 의한 시공경험평가(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의 비율로 평가) 및 경영상태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낙찰자 통보 예정일 : 2004. 3. 29한

7.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148,544,00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 예정가격의 87.745%를 적용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적격심사 대상).

8.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G2B이용자 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G2B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적격심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자치행정과(453-221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9. 문의할 곳 : 남동구청 자치행정과 경리팀 (☎ 453-2210)

2004년 3월 1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4 - 185호

(긴급) 물품구매 입찰공고(전자입찰)**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견 명 : 2004년도 가로등설치 및 보수공사 관급자재 구입(연간단가)
- 규격 및 수량 : 관급내역서 및 시방서 등 규격서 참조
- 기초금액 : 80,000,000원(부가세 포함)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04. 12. 31일 이내
- 입찰방법 : G2B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04년 3월17일(수)오전09:00~3월22일(월)오후13:00
- 입찰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4년 3월 22일(월) 14:00 입찰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수 있습니다.
- 발주부서 및 담당자 : 건설과 토목팀 정재은 (☎032-453-2556)

※제품에 관한 문의 사항은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확인 후 입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자로서 G2B(국가종합 전자조달) 전자입찰이용자등록 업체이며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둔 업체

3.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 조 규정에 의합니다.**4.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 한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낙찰제****6. 낙찰자 통보예정일 : 입찰실시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통보 간주.**

7.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80,000,000원)의 $\pm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8.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조달청 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 규격서,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자치행정과(453-221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2004 년 3 월 16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04 - 188호

공사(견적)입찰공고(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남촌동 중앙길외 4개소 농로포장공사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98-2번지 일원 외 4개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설계금액 : 68,839,500원(추정가격 43,980,000원. 부가세4,398,000원. 품질시험비 275,500원. 관급자재비20,186,000원 포함)
-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 2004년 3월18일(목)오전09:00 ~ 2004년 3월23일(화)오후10: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4년 3월 23일(화) 11:00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수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기간 : 2004년 3월 18일(목) ~ 2004년 3월 23일(화) [남동구청 도시정비과]
- 현장설명 : 생략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 주된 사업소(영업소)를 갖춘자로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업체이며,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체중 포장공사업 면허소지업체

3.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 설계금액중 관급액을 제외한 기초금액(48,653,500원)의 ±3%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 예정가격의 87.745%를 적용하는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제외

6. 낙찰자 통보 : 입찰일시후 낙찰자 결정과 함께 낙찰통보한 것으로 간주

7.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G2B(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G2B(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자만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G2B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우리구에서 제시한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시 차순위자와 계약함과 동시에 행정제제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자치행정과(453-221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8. 문의할 곳 : 남동구청 자치행정과 경리팀 (☎ 453-2210)

2004년 3월 17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분임정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4 - 189호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례명 :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2004년도 지방세법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기타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함(안 제8조제2항)

나.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제3항)

다. 신고납부 동시이행 절차가 신고와 납부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50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 4. 6일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8번지, 참조 : 세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전화 : 453 - 2240, 2242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그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 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1조의 2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송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

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시행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
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 또는 유보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
자

제37조제2항 본문 및 제2호중 “가격”을 각각 “가액”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및 제2항중 “신고 납부”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안)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생략)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 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 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 한 경력이 있는 5급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법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 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 상의 직에 재직한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 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⑥(생략) 제17조의2(서류송달의 방법)①~②(생략) <u><신설></u>	③~⑥(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서류송달의 방법)①~②(현행 과 같음) ③법 제51조의 2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현 행	개 정(안)
제36조(납세의무자)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5.(생략) 6. <u>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 예정구역조성사업및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유보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u> ③(생략) 제37조(과세표준)①(생략) 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가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u>가격</u>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생략)	<u>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 접수인을 날인받도록 하여야 한다.</u> 제36조(납세의무자) ①(현행과 같음) ②----- ----- ----- 1.~5.(현행과 같음) 6. <u>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시행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유보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u> ③(현행과 같음) 제37조(과세표준)①(현행과 같음) ②-----가 액----- -----가액----- 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안)
2. 감면조례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u>가격</u>	2. ----- ----- ----- <u>가액</u>
3.~6.(생략)	3.~6.(현행과 같음)
③~④(생략)	③~④(현행과 같음)
제50조(납기)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u>신고</u> 납부하여야 한다.	제50조(납기)①----- ----- ----- <u>신고하고 납부</u> -----.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구청장에게 <u>신고</u> 납부하여야 한다.	②----- ----- ----- <u>신고하고 납부</u>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4-190호

인천광역시남동구보안등설치및관리지침(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남동구보안등설치및관리지침(안)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남동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월 17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보안등설치및관리지침(안)

2. 제정취지

보안등은 야간 주민 안전 및 방법에 필수적인 조명시설로 보안등설치및관리지침(안)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보안등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제정내용 : “별첨” 참조

4. 의견제출

이 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2004년 4월 6일까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453-2556)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인천광역시남동구보안등설치및관리지침(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4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정사유

- 보안등은 야간주민 안전 및 방법에 필수적인 조명시설로 보안등 설치및관리지침(안)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보안등 관리(신설포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보안등은 폭 12m미만도로에 설치하고 12m이상 도로에도 가로등 설치가 부적합 경우에는 보안등 설치 가능 규정 [안 제3조]
- 보안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보안등 유지관리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 [안 제4조]

■ 본 문

“별 첨 참 조”

■ 참고사항

- 2004년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계획
- 인천광역시부평구보안등설치및관리지침

인천광역시남동구 예규 제 호

인천광역시남동구보안등설치및관리지침(안)

인천광역시남동구보안등설치및관리지침(안)은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보안등설치및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인천광역시남동구보안등설치및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안등의종류) 보안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종 류	용 량	광 속
고압나트륨	100와트	9,500루멘
	50와트	3,000루멘

제3조(설치) ①보안등은 폭 12미터미만 도로에 시설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 12미터이상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설치할 때 : 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
2. 보안등 전용주에 설치할 때 : 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
3.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에 설치 할 때 : 지상 2~5미터로 설치

②보안등을 설치할 때의 기준조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

1. 교통량이 많은 주택 지역은 5룩스이상
2. 교통량이 적은 주택 지역은 3룩스이상

③수신기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 1.8~2.2미터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보안등의 등기구는 도로의 넓은 면적을 밝힐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관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보안등 유지관리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기관 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탁업무의 범위) 구청장이 수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보안등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안등의 직영보수
2. 보안등의 관리대장 작성 및 기록유지
3. 보안등 보수관련 민원접수 처리
4.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 등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수탁기관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에 점멸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에 의한 확인 또는 보수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표찰 및 기록) 보안등 표찰은 [별표1]에 정하는 규격으로 설치하되, 수탁기관은 관리 번호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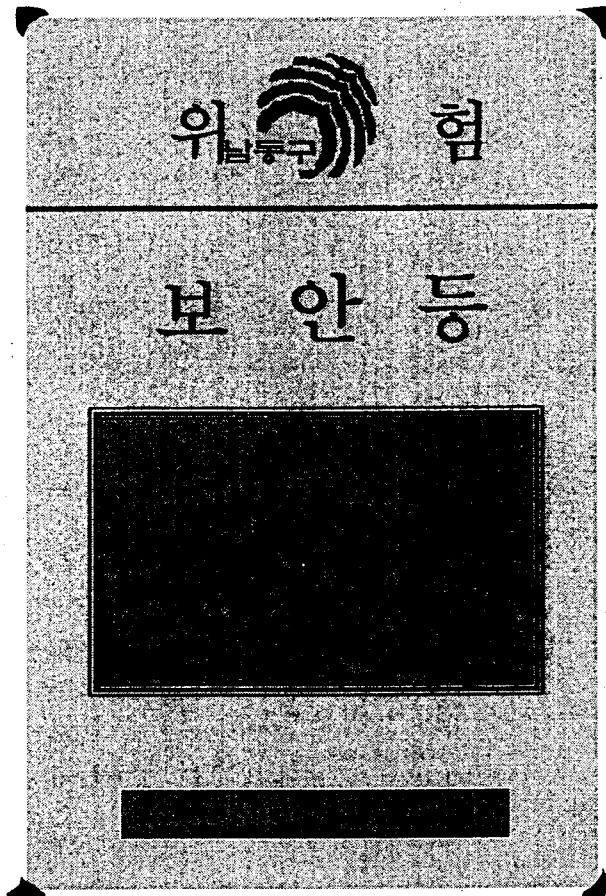
제8조(관리대장) 수탁기관은 보안등의 보수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별지제1호 서식]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보안등 표찰(예시)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4-191호

재결서정본공시송달공고

인천동부교육청교육장이 시행하는 학교시설사업 [석정중학교신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하여 2004.2.17일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하여 재결서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불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우리구 도시계획과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04. 3. 18.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동부교육청교육장
2. 사업의종류 : 학교시설사업<석정중학교신설사업>
3. 재결 일자 : 2004. 2. 17
4. 공 고 기 간 : 2004. 3. 18 - 2004. 4. 1
5. 재결서정본교부처 및 문의전화
 - 교부처 : 인천광역시남동구청(도시계획과)
 - 전 화 : (032)453 - 2664

6. 공시송달대상

- [소유자] - 뽕엘교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362-82
 - 미 상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758-29

[관계인] “해당없음”

7. 기 타

재결서정본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입찰공고(전자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도로보수차 구입
- 규격 및 수량 : 시방서 및 세부 규격서 참조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 구입기초금액 : ₩178,000,000원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04년03월20일(토)오전09:00 ~ 03월 29(월)오후18:00
- 입찰집행(개찰)일시 및 장소 : 2003년 03월 30일(화) 11:00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수 있습니다.
- 발주부서 및 담당자 : 건설과 토목팀 박대원(20032-453-2572)
※제품 규격등에관한 문의사항은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확인후 입찰바람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자로 특장차 제조업 공장등록 소지업체로서 도로보수트럭 형식승인 업체

3.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4.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하고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낙찰제

6. 낙찰자 통보예정일 : 2004. 04. 03일한

7. 예정가격의 결정

- 기초금액(₩178,000,000원)의 ±3%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이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

8.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할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우리 구에서 제시한 시방서, 규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8호 또는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가 되게 입찰을 한 자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구 자치행정과(453-221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2004 년 03 월 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리관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04- 193호

공 시 송 달

성 명 전 영 식 (580825-2143510)

주소 또는 거소 인천 남동구 간석1동 436-8 (4/3)-----주민등록지

인천 남동구 수산동 593-2 (20/1)-----과세물건소재지

서 류 의 명 칭 2003년도분 재산세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2003년도분 재산세, 세액 : 396,080원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과세대상물건지로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2회 반송되어 송달이 불능인바, 납기를
2004. 03. 25로 변경하여 남동구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제52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4년 03월 19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시 송 달 내 역

□ 납세의무자 : 전영식()

□ 송달서류의내용 : 2003년도분 재산세고지서

□ 납 기 : 2004년 2월 27일

□ 송달장소 : 인천 남동구 간석 ---주민등록지

인천 남동구 ---과세물건소재지

□ 재산세액 : 396,080원

